

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의 추진방안

유기호 산안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

1. 목 적

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제정여건이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병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자율보건관리능력 진작

2. 지원목표 : 9,500개 사업장(대상선정 : 9,849개소)

3. 추진방침

가. 대상 사업장

- 1) 대상사업장 : 5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지원을 희망하거나 산업보건취약 사업장으로서 사전 사업주교육에 참석한 사업장
 - 발암물질취급, 노출기준초과,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등 산업보건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을 독려하고 신청독려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방노동판서의 협조를 얻어 임의선정
- 2) 대상사업장 선정 우선순위
 - ① 자율신청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
 - ② 발암물질취급사업장, 전년도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사업장 및 전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허용기준 초과사업장(임의선정)
 - ③ 자율신청사업장으로서 '97년이후 지원을 적게 받은 사업장
 - * 동일 순위사업장군중 ① 화학물질취급사업장 ④ 전년도 진폐유소견자발견 또는 분진허용기준 초과사업장, ④ 전년도 난청유소견자발견 또는 소음허용기준초과사업장 ⑨ 5인미만사업장, ⑨ 과거 특수검진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 보건관리취약사업장 순으로 선정
 - * '99년도중 추가선정사업장은 '99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으로 간주(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)

나.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

1) 실시기관 자격

- 노동부에서 지정된 「보건관리대행기관」으로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직접 또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한 기관

2) 실시기관별 지원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한계

-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보건관리사업(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「보건관리대행사업」과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에 의한 「보건지도」를 합한 것)은

- 보건관리대행기관별 대행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한계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) 범위내에서 운영하되
-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장수 3개소를 일반 보건관리대행사업장 1개소로 간주하여 계산

※ 실시기관별 대행한계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별 대행한계를 적용

※ 실시기관별 대행요원중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담당자는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지정하도록 지도하여 내실 있는 보건지도 유도

3) 보건지도 분야별 자격기준

-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「가. 인력기준」에 해당하는 자

4) 사업장별 보건지도 담당 및 설명제 실시

- 실시기관별로 개별사업장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상사업장별로 일관된 기술지원 실시

- 개별사업장별 보건관리 담당자의 설명제 실시

- 개별사업장에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실시기관, 담당요원의 자격.면허, 성명, 연락처, 전화번호, 방문예정시기 등을 기재한 사내게시판 게시

다. 대상사업장의 보건책임자(카운터 파트)선정

- 사업추진시 대상사업장별로 보건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

- 지역본부(지도원)에서 안내공문 발송시 보건책임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실시기관과 대상사업장이 협의, 보건책임자 선정

라. 지원방법

1) 보건지도(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)

- 보건지도는 사업장당 최대 8회를 지원하되

- 분야별로는 최소한 의학분야는 1회이상, 위생분야는 2회(반기1회)이상, 간호분야는 3회(3~4월 1회)이상 대상사업장을 방문지도하고

- 나머지 지원회수 1~2회는 사업장 실정에 따라 필요분야 추가 지원

※ 보건지도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과 병행불가

- 1일 보건지도 사업장수는 사업담당자 1인이 2~3개 사업장 방문지도 하되 1회 방문지도 시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당 총 지원시간은 지원회수에 2시간을 곱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보건지도 실시

- 의학분야는 주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건강상담 및 유소견자 관리 등 건강관리지원

- 위생분야는 주로 유해물질관리, 보호구 등 보급, 상.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 및 작업환경개선 지원

- 간호분야는 주로 근로자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, 일반 및 직업병 유소견자관리, 건강증진운동지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종합지원

2)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: 1 ~ 2회 지원

- 지원회수 : 작업환경측정(상반기) 및 특수검진 1회 지원

- 발암성확인 또는 추정 물질취급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2회 지원하고 벤젠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, 사염화탄소는 특수건강진단을 2회지원

3) 보호구, 안전보건표시판 및 각종 기술자료 등 보급

- 보호구 : 공단의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, 방독마스크, 보안경, 귀덮개 등 4종

- 안전보건표시판, 유해물질제시판 등 : 실시기관에서 소요량을 파악하여 각 지역본부(지도원)에 통보하면 각 지역본부(지도원)에서 일괄 제작하여 실시기관을 통해 보급

- '98년도 지원대상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표시판, 유해물질제시판 등을 기 보급한 경우에는 '99년도 보급대상에서 제외

4) 작업환경시설 개선 자금지원

- 작업환경개선 시설자금지원(보조금지원)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
5) 실시기관별 시범사업 추진

-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

- 시범사업 대상 : 전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사업장, '99년도에 작업환경개선 기술이 개발된 15개공정과 유사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및 기타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유해공정 보유사업장

- 사업수행방법

- 유해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시설 개선지원 : 작업환경시설개선대상 사업장별 시범사업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
- 기 개발된 15개공정 작업환경개선기술 보급 : 업종별, 공정별 시범사업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

- 수수료 지원내용

- 실시기관에서 수립하여 공단에서 승인한 시범사업계획에 의거 기본 보건지도 6회 외에 필요에 따라 6회의 보건지도 추가지원하고 법 제42조에 의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추가지원

○ 뇌·심혈관질환예방 시범사업

- 시범사업 대상

- 과거 3년간 업무상 재해로 뇌·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사업장
 - 전년도 건강진단결과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뇌·심혈관 질환의 기초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
- * 전체 근로자중 요관찰자(C) 및 일반병유소견자(D₂)가 15% 이상인 사업장 우선선정
- 건물관리업, 운수·창고 보관업 등 40세이상 고령근로자가 30%이상인 사업장
 - 작업상의 뇌·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

*** 뇌·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작업 예**

-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
- 고정적인 야간작업
- 정신적·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(예 :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)
-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
-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냉작업
- 간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
- 운전작업, 고소작업 : 부정맥이 있을 때
- 소음이 심한 부서에서의 작업
-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(예: 이황화탄소, 염화탄화수소류, 니트로글리세린, 메틸렌클로라이드 등)
- 금연, 절주 프로그램 실시를 희망하는 사업장

- 사업수행방법 : 실시기관별 뇌·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
- 수수료 지원내용
 - 실시기관에서 수립하여 공단에서 승인한 시범사업계획에 의거 기본 보건지도 6회 외에 필요에 따라 6회의 보건지도 추가지원
 -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일반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(C), 일반병유소견자(D2) 또는 전년도 건강진단 미 실시자에 대한 다음의 검사비용 지원

* 검사비용 지원항목 : 흉부 X-선직촬(필요시 1회), 혈당검사(매 방문당 1회), 혈중 총콜레스테롤(2회), 혈중 HDL(2회), 혈중 중성지방(2회), 심전도(필요시 1회)

마. 실시기관 교육

- 1) 실시기관별 보건지도 담당자 교육
 - 보건지도요원의 『질 향상』을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
- 2) 사업실시결과에 대한 간담회 개최
 - 매분기 실시된 실시기관의 사업수행실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본부(지도원)별 보건지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회의 개최
- 3) 시범사업 사례발표회 개최
 - 지역본부별 지방대회를 개최한 후 우수 시범사업 사례 2~3편을 선정하여 전국 규모의 시범사업 사례발표회 개최

바. 실시기관 사업수행 실태평가 및 지원사업장 만족도조사

- 1) 실시기관 사업수행 실태평가
 - 지역본부(지도원)에서 실시기관별로 매분기 1회이상 사업수행 실태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
 - 실시기관 사업수행실태 평가시에는 분기별로 해당 실시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장 5%를 임의 추출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기관 평가
- 2) 지원사업장 만족도조사 : 지원 사업장 전수 설문조사
- 3) 결과조치
 - 사업수행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완, 실시기관에 대한 평가, 지원수수료 정산 등에 활용

사.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.운영

1) 중앙운영위원회

- 보건관리지원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본부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.운영
 - 중앙운영위원회는 공단본부, 노동부,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및 학계 등 관계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 기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심의안전 발생시 회의 개최

2) 지역운영위원회

-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(지도원)별로 구성.운영
 -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(지도원), 지방노동관서, 지역 근로자 대표, 지역 중소기업단체, 학계, 실시기관 실무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5 ~ 10인으로 구성

아. 수수료

1) 보건지도 수수료 : 1회당 68,000원(사업장당 544,000원)

※ 시범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816,000원 까지 지급 가능

2) 작업환경측정 수수료

-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는 기본측정비와 유해인자별 측정분석비를 산정하여 지급
 - 기본측정비는 1인 측정 사업장은 사업장당 170,900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측정 사업장은 사업장 당 279,900원 지급하고 유해인자별 측정분석비는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정한 항목별 수수료 지급

3) 특수검진 수수료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지급(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 제외)
 - ※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(근로자)는 동 사업장(근로자)이 법적 의무가입자인 경우에는 일반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,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수검진 수수료 전액 지급
 - ※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검진 수수료는 검사인자의 특성,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액표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 적용

5) 선금의 지급

- 실시기관이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, 재료비 등의 확보를 위한 선금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선금 지급

자. 사업추진부진 및 부실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제한

- 보고서 허위작성, 수수료 허위청구 또는 고의로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고
 -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건지도, 작업환경측정, 특수검진 각각의 수수료 총액의 30% 범위내에서 추가 삭감(별칙성 삭감)
- ※ 구체적인 위반내용, 삭감액, 방법 등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
- 지원한계초과, 측정한계초과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규정 위반시는 당해 수수료 전액 삭감
- 보건지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충족토록 1차 지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보건지도 수수료 삭감
- 기타 계약내용 위반 또는 관련규정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한 후 동일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수수료 삭감

2) 지원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

- 지원실적 부진 기관은 부진내용에 따라 차기년도 물량배정 또는 참여 제한 조치

4. 기타 행정사항

- 사업부진 및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지역본부(지도원)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참여 제한 또는 배정물량 조정등 적의 조치하여 내실있는 지도가 되도록 유도
 - 특히, 정도관리 불합격기관, 측정.검진.대행 등 산업보건사업수행에 대한 노.사간의 문제야기기관, '99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추진 부실 및 부진기관 등에 대하여는 동 사업참여 제한 또는 물량배정 조정 등 지역본부(지도원) 특성에 따라 조치
- 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하여 실시기관에게 홍보하고
 - 전국 규모의 시범사업 사례발표회에 입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 및 차기년도 물량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

발암성확인 또는 추정물질의 종류

1. 특정화학물질 제1류물질(5종)

- 가.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
- 나. 오르토-톨리딘과 그 염
- 다. 베릴륨
- 라. 벤지딘 염산염
- 마. 석면
- 바.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(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%이하인 것 제외)
- 사. 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(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.5%이하인 것 제외)

2. 특정화학물질 제2류물질(11종)

- 가. 벤젠
- 나. 베타프로피오락톤
- 다. 아크릴로니트릴
- 라. 아크릴아미드
- 마. 염화비닐
- 바.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
- 사. 황산디메틸
- 아. 요오드화메틸
- 자. 삼산화비소
- 차. 중크롬산과 그 화합물
- 카. 크롬산과 그염
- 타. 가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(함유된 중량비율이 1% 미만인 것 제외)

3. 특정화학물질 제3류물질(1종)

- 가. 포름알데히드
- 나. 가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(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% 미만인 것 제외)

4. 제1종 유기용제(2종)

- 가. 사염화탄소
- 나. 클로로포름

5. 제2종 유기용제(1종)

- 가. 디클로로메탄